

1. 5-06-0600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변경전	변경후	비고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포괄한도용) (생 락)</p> <p>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생 락)</p> <p>추가약정서(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p> <p>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하며 "원 약정서"와 이 추가약정서를 합쳐 "대출약정"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 락)</p>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포괄한도용) (좌 동)</p> <p>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좌 동)</p> <p>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p> <p>_____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좌 동)</p>	<p>약정서 제목 변경</p> <p>직접 기재 방식으로 변경 발주서로 변경 일부 문구 삭제</p>

<p>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u>기업</u>을 말하며,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p> <p>3.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p> <p>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로서, 발주서 상 대금지급확약비율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p>	<p>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u>기업</u>으로서,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p> <p>3.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p> <p>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을 말합니다.</p>	<p>표현변경 용어변경 대출비율은 4조에 명시</p>
<p>5. “채권확정”이라 함은 (신 설)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p>	<p>5. “채권확정”이라 함은 <u>구매기업</u>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 및 대금지급일을 확정(이하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정의 및 설명 추가</p>
<p>6. (생략) (신설)</p>	<p>6. (좌동)</p> <p>7.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거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p>	<p>용어의 정의 추가</p>
<p>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결제일을 말합니다.</p> <p>8.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미래채권 등을 말합니다.</p>	<p>8.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p> <p>9.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등 미래채권을 말합니다.</p>	<p>항체가 표현 및 용어 변경</p>
<p>9 ~ 10 (생략)</p>	<p>10 ~ 11 (좌동)</p>	<p>문구변경 항체가</p>
<p>제2조 (입금계좌의 지정) 본인은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p>	<p>제2조 (입금계좌의 지정) 본인은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p>	

<p>을 직접 기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65 284 981 427"> <tr> <th data-bbox="165 284 439 341">예금주</th> <th data-bbox="439 284 712 341">예금주 실명번호</th> <th data-bbox="712 284 981 341">계좌번호</th> </tr> <tr> <td data-bbox="165 341 439 427"></td> <td data-bbox="439 341 712 427"></td> <td data-bbox="712 341 981 427"></td> </tr> </table>	예금주	예금주 실명번호	계좌번호				<p>을 직접 기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010 284 1825 427"> <tr> <th data-bbox="1010 284 1099 341">예금주</th> <th data-bbox="1099 284 1305 341">예금주사업자번호</th> <th data-bbox="1305 284 1440 341">계좌번호</th> <th data-bbox="1440 284 1825 341">비고</th> </tr> <tr> <td data-bbox="1010 341 1099 427"></td> <td data-bbox="1099 341 1305 427"></td> <td data-bbox="1305 341 1440 427"></td> <td data-bbox="1440 341 1825 427">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td> </tr> </table>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p>실명번호에서 사업자번호로 변경하고 설명추가</p>
예금주	예금주 실명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p>제3조 (발주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p> <p>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명세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명세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 구매기업이 통보한 발주명세에 대하여 본인이 미래대출을 실행하거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기업은 발주명세를 취소할 수 없기로 합니다.</p> <p>③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④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명세 전송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⑤ 구매기업의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하기로 합니다.</p>	<p>제3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p> <p>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삭 제)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 구매기업이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 본인이 미래대출을 실행하거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취소할 수 없기로 합니다.</p> <p>③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 은행은 취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④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⑤ 구매기업의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기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하기로 합니다.</p>	<p>용어 변경 하고 방식불문</p> <p>용어변경</p> <p>문구순화</p> <p>용어변경</p> <p>용어변경</p> <p>알기쉬운 금융용어 용어변경</p>														
<p>제4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 원 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매기업이 은행에 통보한 발주서 상의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신 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별로 은행이 정한 최대 대출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제4조 (개별대출의 실행)</p> <p>① 원 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과 약정한 발주서 상의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발주서별로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삭 제)</p>	<p>2항과 내용 통합, 가능횟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자후취에 따라 대출가능비율 인하</p>														

<p>③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 <u>이내에서</u>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④ 개별대출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주서 상 대금지급일까지로 자동 확정됩니다.</p> <p>⑤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이후에 대출 신청하기로 합니다.</p> <p>⑥ 개별대출의 실행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제2조에서 정한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p> <p>⑦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이 되면 본인이 실행한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은행은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e-안심팩토링에 따른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등 별도의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하거나, 상생일반구매론에 따른 선입금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이하 “관련 대출”이라 합니다)으로 기 취급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의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u>까지</u>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③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출실행시 발주서 상 발주서만기일로 임시 지정됩니다.</p> <p>④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대출 신청하기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항 채상 및 문구정비</p> <p>항 채상 발주서만기일로 표현 변경</p> <p>항 채상</p> <p>이자후취에 따라 삭제</p> <p>5조 상환방법에 별도 명기</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신 설)</p> <p>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대금지급일로 합니다.</p> <p>②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③ (신 설)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전까지 추가적</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e-안심팩토링대출,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p> <p>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p> <p>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p>	<p>신설</p> <p>4조에서 이동하여 문구 변경</p> <p>항 채하</p> <p>항 채하</p> <p>항 채하</p> <p>3항에 한정</p>

<p>인 대출이 불가합니다.</p> <p>④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 한 경우,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관련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개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1. <u>관련대출의</u>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신 설)</p> <p>2.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p> <p>⑤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6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p> <p>1. <u>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u></p> <p>2. <u>본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u></p> <p>3. <u>본인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u></p> <p>4. <u>이 약정에 의한 대출 또는 본인이 은행과 약정한 다른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u></p> <p>5. <u>본인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u></p> <p>6.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u>취급된 경우</u></p> <p>7 ~ 8 (생 략)</p> <p>9. 구매기업이 <u>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u> 은행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한 경우</p>	<p>대출이 불가합니다.</p> <p>⑤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p> <p>1. <u>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u></p> <p>2. <u>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u></p> <p>3.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p> <p>⑥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제6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p> <p>1. <u>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u> (삭 제)</p> <p>2. <u>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u></p> <p>3. <u>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이나 다른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u></p> <p>4. <u>본인 또는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u></p> <p>5.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u>발주서가 등록된 경우</u></p> <p>6 ~ 7 (좌 동)</p> <p>8. 구매기업이 <u>대금지급일에</u> 은행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한 경우</p>	<p>항 체하 참조항 변경에 따라 문구 변경 용어변경 이자 후취에 따라 내용 추가 호 체하</p> <p>항 체하</p> <p>구매기업 추가 문구변경</p> <p>1항 공공정보에 포함</p> <p>호 체상 및 구매기업 추가 호 체상 및 구매기업 추가 호 체상 및 구매기업 추가 호 체상 및 문구 변경 호 체상 호 체상 및 용어 변경</p>
--	---	--

<p>10 ~ 11 (생략)</p> <p>제7조 (생략)</p> <p>제8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u>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설)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매기업의 부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u> 2. <u>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허위매출, 현금유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용도 외의 거래를 한 경우</u> 3. <u>기타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약정의 종료를 은행이 통지한 경우</u> <p>제9조 (이 추가약정의 효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 전송된 발주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내에서 <u>1년 기간단위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대출금이 여신기간 만료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u>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u> 3. 은행과 구매기업간 체결한 <u>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 협약이 종료된</u> 	<p>9 ~ 10 (좌동)</p> <p>제7조 (좌동)</p> <p>제8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삭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u>곧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u> 2. (삭제) 허위매출, 현금유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되어 대출을 받은 경우 (삭제) <p>제9조 (추가약정의 효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동)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 전송된 <u>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취급된 경우에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u>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내에서 <u>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대출금이 여신기간 만료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u>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u> (삭제) 	<p>호 제상</p> <p>극단적인 문구 삭제</p> <p>기본약관사유로 통일</p> <p>대출받은 경우로 변경</p> <p>은행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 삭제</p> <p>조 제목 변경</p> <p>미래대출이 취급된 경우로 한정</p> <p>구매기업과의 협약연장에 따라 기간 결정</p> <p>신용정보관리규약문구 변경사항 반영</p> <p>본문에 내용이 포함</p>
--	---	--

<p>경우</p> <p>④ (생 락)</p> <p>(이하생략)</p> <p>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생 락)</p> <p>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p> <p>(생 락)</p>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생 락)</p>	<p>④ (좌 동)</p> <p>(좌 동)</p> <p>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좌 동)</p> <p>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p> <p>(좌 동)</p>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좌 동)</p>	<p>되었으므로 삭제</p>
--	---	-----------------

2. 시행일 : 2014년 7월 24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후 신규약정고객부터 적용